

[별표3]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<개정 2013.07.24, 2014.02.07, 2015.11.10, 2016. 2. 3, 2017.7.17>

구분		장학금(학비감면) 수혜대상자	수혜율	비고
교직원 직계장학금		교직원 직계 가족	수업료의 50%	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
교직원장학금		본교 교직원(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)	수업료의 65%	제출서류: 재직증명서
		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(원격평생 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)	수업료의 50%	
공직자 장학금		5급 이상 공무원	수업료의 50%	*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 기업체 포함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계급 명시)
		6급 이하 공무원	수업료의 30%	
군 장학금		직업군인	수업료의 30%	제출서류: 복무확인서
군위탁 장학금		군위탁(정원외)	수업료의 50%	
일반장학금	협약기관	각종 사회복지/상담시설 및 단체직원 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 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	수업료의 30%	*우리대학 또는 대학원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있는 경우 적용. *정규직 및 전일제 비정규직에 한함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정규직, 비정규직 명시)
	기타기관	각종 사회복지/상담시설 및 단체직원 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 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	수업료의 25%	
본교 출신		학부, 대학원, 특수대학원,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	수업료의 30%	제출서류: 졸업증명서 [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 명의학위 취득자 졸업증명서 제출]
총장추천		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	수업료의 20~50%	모집 정원의 10% 이내
직계가족 동시재학		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재학 (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)	수업료의 30%	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
기타		국가유공자(본인 및 1대 자녀)	수업료의 35%	제출서류: 증빙서류

1. 시행일

- 2018학년도 신(편)입학생부터 적용

2. 시행원칙

- 학비감면 내에서 이중 수혜 불가
- 학비감면과 장학금의 이중 수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함
-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, 2개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

3. 제출서류

- 이 감면기준에 의거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기 등록 시 해당 서류를 제출

4. 의무사항

- 감면 적용 해당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감면 항목의 효력이 변경(입사, 퇴사 등)되면 교학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감면 혜택을 취소 또는 신규 해당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함